

# 대학(기술)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

대학의 R&D성과인 사업화유망기술에 기반한 창업기업의 관내 설립 및 강소기업으로 성장 자생력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학(기술)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

2020년 3월 17일  
울산과학기술원

## 1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0년 1월 ~ 12월
- 지원대상: 대학(UNIST/울산대/울산과학대) 기술을 활용하여 i)교원이 울산 관내 창업예정자이거나 ii) 교원이 '18.5.1.이후 창업한 울산 관내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인 경우
- 지원내용: 시제품제작, 산업재산권 취득 등 사업화자금 40,000천원 내외, 전문기관 컨설팅(BM 및 IR수립) 등

## 2 지원방안

- 지원내용

구분	세부내용	지원금	지원대상
사업화 자금	· 시제품제작, 기술정보활동(자문·용역) · 산업재산권 취득, 홍보/마케팅 등을 위한 국내외출장 등 기업 운용자금	기업별 40,000천원 내외	6개사
전문기관 컨설팅	· 비즈니스모델/기업홍보자료 기획 등	-	
기타 지원사항	· 기업 설립 법무행정 비용지원 · 기업 운영 멘토링/네트워킹 지원/성과보고회 · 후속투자유치 연계 지원(민간 투자회사 등 별도 미팅 및 협의, Demoday 개최 등) · 기업 성장 자생력 지원(투자유치 IR참가, 멘토멘티 활동 등)	-	

###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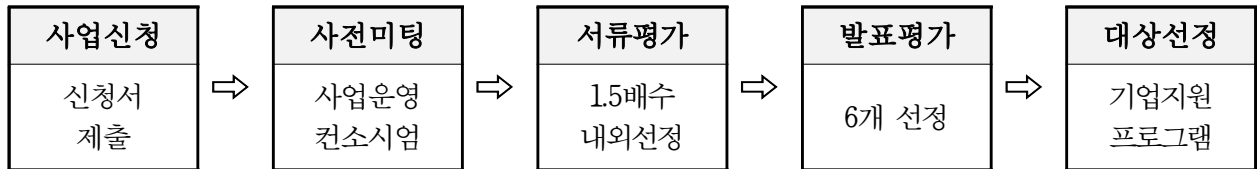
## 신청자격

- UNIST/울산대/울산과학대 소유의 지식재산권(노하우 단독 제외)을 활용하여 울산 관내 창업예정교원 또는 2018. 5. 1. 이후 창업한 교원
- 이때 창업은 반드시 해당 교원이 설립(예정)기업의 대표 등 등기임원(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)에 취임하거나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/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%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함
- \* 교원의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해당 교원이 대표나 등기임원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박탈하지 않음

### 4

## 선정절차

- 선정절차



- \* 사업신청 전 사전미팅 가능(대학 담당자에게 문의)

- 평가기준

서류평가	발표평가	비고
기술내용, 사업화 유망성, 사업화 자금계획 등	기술성, 시장성, 기술책임자 역량 등	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

- \* 상기 절차는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음

### 5

## 신청서 접수 및 일정

- 접수기간 및 선정일정

구분	신청서접수	사전미팅	서류평가 결과통보	발표평가	최종선정
1차	'20.04.17.(금) 18:00까지	'20.04.20.(월) ~ 04.29.(수)	'20.05.08.(금)	'20.05.15.(금)	'20.05.18.(월)

- \* 선정 평가 이후 미달 시 추가선정 진행 예정
- \* 상기 절차는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음
- \* 서류평가 결과는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 유선통보 예정
- \* 발표평가는 일정 및 평가방법을 추가로 안내 예정
- \* 선정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, 선정대상 중 선정포기자가 발생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선정 취소될 경우 선정예비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수 있음

- 접수처(E-mail 접수 및 마감 당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  - 울산과학기술원: 기술사업화센터 김노을(Tel.052-217-1357, kimnoel@unist.ac.kr)
  - 울산대학교: 산학연구지원팀 김다솜(Tel.052-259-1172, ekthal94@ulsan.ac.kr)
  - 울산과학대학교: 창업창직교육센터 정우현(Tel.052-230-0598, whjung@uc.ac.kr)
- 제출서류: 사전미팅신청서(별지양식 1호) 및 사업신청서(별지양식 2호)

## 6

### 향후 일정

- 기업설립 (\* 2020.09.30.이전까지)
  - 기업설립 법무행정 비용지원 및 기업설립 이후 사업화자금 지원
- 선정기업 지원 (\* 사업 종료 시 까지)
  - 전문기관 컨설팅 및 기타 후속투자유치 연계 지원(민간 투자회사 별도 미팅 및 협의) 등 기타 지원
- \* 상기 일정은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음

## 7

### 유의 사항

- 사업화 자금 지원 및 환수
  - 사업화 자금은 기업설립 이후 별도 신청을 통해 기업소유 사업비 전용 계좌로 입금
  - \* 제출서류: 통장사본, 계좌입금신청서(별지양식 7호)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필요시, 주주명부)
  - 지원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계좌잔액은 최초 0원으로 하며,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는 본 사업 용도로만 사용
  - \* 단, 부가가치세 대응자금은 본 사업 용도로 인정함
  - 사업화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기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및 검증을 통해 지원금의 적정 집행여부 확인 후 부적정 집행 시 환수
- 사업화 자금 집행 가이드라인
  - 급여, 자본금, 사무공간임대료, 제세공과금(부가가치세, 법인세, 전기요금, 상수도비 등), 기술이전료 등으로는 사용이 불가함

□ 사업화 자금 편성 및 사용처

세부항목	자금 재원별 사용 상세내용	상/하한액
시제품 제작비	- 시제품 제작 관련 용역비 - 시제품 제작 관련 시험료 및 재료비 - 시제품 제작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용료 - 제품 디자인 및 컨셉 개발 관련 비용 등	총 사업비의 10%이상
기술정보 활동비	- 경영기술 관련 애로사항 및 문제해결 전문가 자문료 - 초기창업 및 기업운영 관련 참고문헌(자료/서적)구입비 등	
산업재산권 취득비	-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관련 비용 - 기업 및 상용화 제품 인증 비용 등 * 제품 출시·판매를 위한 각종 인증관련 비용 * 기업인증(ISO, 벤처기업 인증 등)	
홍보/마케팅, 출장 관련 비용	- 국내외 전시회, 박람회 등 참석 참가비 및 출장비 - 기업 및 제품 홍보물 제작 등 * 브로슈어, 카탈로그, 홈페이지, 기념품 제작관련 비용 등 - 시장조사 및 분석 등 시장정보 수집관련 비용 등 - 사업화 업무관련 국내외출장 비용 등 (참여기관이 추진하는 후속투자연계 진행시 관련 해외출 장비 포함)	총 사업비의 50%이하
소모품비 및 회의비	- 기업운영 사무용품(필기도구, 프린터 토너 등) 구입비 - 업무협의 관련 회의비 등 * 사무기기(PC,프린터 등) 구입에는 사용 불가	총 사업비의 15%이하

- 설립기업은 사업종료일까지 사업화 자금 집행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
- 사업비 집행은 기업명의로 법인카드, (세금)계산서 등을 통하여 거래함을 원칙으로 함
- 세부항목 간 전용은 공문을 통한 주관기관 승인사항이며 세부항목 내 전용은 증빙서류(내부결재문 등)를 갖추어 설립기업이 자체 처리하도록 함
- 사업화자금의 잔액 및 발생이자는 해당 사업 연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사업화자금 집행 시 적격증빙 영수증(법인카드 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에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화자금으로 집행 인정함
  - 단, 부가가치세 구분 표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에 공급가액만을 사업화자금으로 집행 인정함
  - 설립기업은 별도의 세무컨설팅(사업비 집행가능)을 통하여 공급가액을 구분하는 것을 권장하며, 향후 세무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처리 가능

- 설립기업은 부가가치세 해당 부분에 대해 사업비 전용 계좌로 추가 입금 하여 집행가능
- 사업화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적보고 시 지원금의 부적정 집행이 발생한 경우 기 지급한 사업화 자금을 환수할 수 있음

□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

- 설립기업은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실적보고서(사업화 자금 사용완료 보고서[별지 제11호] 및 정산보고서[별지 제13호])를 제출하여야 함. 이 때,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설립기업은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화 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
- 실적보고서 중 사업화 자금 사용완료 보고서[별지 제11호]는 사진을 제외하고 총 내용이 5매 이상 되도록 작성
- 설립기업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현장실태조사 및 성과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
- 설립기업은 성과점검 또는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방문, 성과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함
- 선정교원 및 설립기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  - 신청 또는 지원금 청구 시의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
  -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
  - 선정교원이 2020년 9월 30일까지 법인설립을 하지 못한 경우
  - 공문서로 요구한 자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
  - 대표이사, 대주주의 횡령·배임·분식회계 등의 범죄행위, 불공정거래,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, 세금포탈 등 법령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
  - 타 기업과의 인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영권의 변화로 당해기업의 경영활동의 연속성이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거래 관계의 불투명, 지출의 부적정, 경영세습 상태 불량 등 투명한 기업 경영에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
  - 선정 후 3년간 울산에 본점 또는 지점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
단, 폐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.
  - 그 밖에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붙임: 별지양식 각 1부. 끝.